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1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박지원·최민희·인요한

장종태 • 이성윤 • 이기헌

임미애・조 국・장철민

소병훈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임.

유류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여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유류분상실사유와 마찬가

지로 기여분에 대해서도 민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의2 및 제1118조).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8조의2제4항 중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를 "제1013조제2항에 의한 청구나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로 한다.

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08조의2 및 1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확정되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118조 준 용 및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第1008第의2(寄與分) ① ~ ③ 第1008條의2(寄與分) ① ~ ③ (현행과 같음) (생 략)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 --제1013조제2항에 의한 청구 는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 나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 한 請求가 있을 경우 또는 第1 가 있을 경우----014條에 規定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 第1118第(준용규정) 제1001조, 제 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 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 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는 유류분에----준용한다.